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기내 반입 표준안 FAQ_V5

2025.02.28.(금)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Q1. 공항에서 보조배터리 수량 또는 용량이 초과되어 항공사 승인을 못 받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 항공사 체크인카운터에서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제한 수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용량을 초과할 경우, 승객이 자발적으로 포기하도록 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항공사에 보관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 항공사는 한시적 기간(3.1~3.14)동안 승객의 보조배터리를 보관하도록 하고, 이 경우 승객에게 14일 이내 찾아가지 않을 경우 항공사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동의서를 받도록 합니다.
- 항공사는 3.1일부터 3.14일까지 한시적으로 보관접수를 받아 14일 동안 보관하며, 14일 이후 찾아가지 않는 배터리는 승객으로부터 받은 동의서를 근거로 14일 이후부터 항공사가 임의로 폐기처분 조치가 가능합니다.

Q2. 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새 보조배터리의 경우, 별도의 단락방지 조치가 필요한가요?

- ☐ 아니요. 포장을 뜯지 않은 경우, 별도의 단락방지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Q3. 포장을 뜯지 않은 새 보조배터리와 사용하던 보조배터리가 총 5개를 초과할 경우 항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 ☐ 소지하고 있는 배터리가 총 5개를 초과한다면 항공사의 승인을 받고 초과한 배터리에 승인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또한 면세구역에서 새 보조배터리를 구입하여 용량 및 수량이 초과하였을 경우, 탑승게이트에서 항공사 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Q4. 보조배터리 전하량 또는 전압(V)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보조배터리 용량이 확인 안 되는 경우, 기내 반입이 제한됩니다.

Q5. 보조배터리 단자를 절연테이프로 붙여서 덮는 경우,
비닐봉투에 넣지 않아도 되나요?

☐ 단자를 절연테이프로 커버한 경우 별도의 비닐봉투에 넣지 않아도 됩니다.

Q6. 보조배터리 단자에 일반 테이프를 붙여도 되나요?

☐ 단락방지 목적을 고려할 때, 절연테이프 사용만 가능합니다.

Q7. 승인스티커는 어떤 경우에 부착하나요?

☐ 규정에 따라 보조배터리의 용량 및 수량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항공사의 승인을 받아 보조배터리에 부착합니다.

○ 100Wh 이하의 보조배터리가 5개 이하면 승인 불필요

- 6개부터 승인 하에 반입 가능하나 의료목적 등으로 사유가 제한됨

○ 100Wh 초과, 160Wh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2개까지 승인하에 반입 가능

○ 160Wh 초과는 반입 불가

- 단, 교통약자 등을 위한 전동휠체어 및 그에 대한 예비배터리는 제외

Q8. 보조배터리에 승인스티커는 어디에 붙여야 하나요?

- ☐ 승인 스티커는 본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합니다.

Q9. 항공사 승인용 스티커 부착 후 다음 비행에서 재사용 가능한가요?

- ☐ 승인용 스티커의 재사용은 불가합니다.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기준에 따라 승인이 필요할 경우, 비행기 탑승 때마다 해당 항공사로부터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Q10. 보조배터리 반입 개수가 많아지면, 몸에도 소지하고 좌석 주머니에도 모두 넣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좌석 주머니의 공간이 제한적이어서 모든 배터리를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 승무원이 판단하여 안전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Q11.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를 충전해도 되나요?

- ☐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는 기내에서 몸에 소지하거나 앞주머니에 보관하여야 하며, 충전이 금지됩니다.

Q12. 장애인용 전동휠체어도 제한이 되나요?

- ☐ 제한되지 않습니다. 규정에 따라 교통약자 등을 위한 전동휠체어 및 그에 대한 예비배터리는 아래 규정에 따라 반입이 가능합니다.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별표 24. 7>

라) 사용자가 **배터리**를 **탈부착**할 수 있도록(예를 들면 접을 수 있는 휠체어 같이) 특별히 설계되어 있는 **이동보조장비**의 경우에는:

- i) **탈거된 리튬이온배터리**는 **객실**에 실어 **운반**할 것
- ii) **배터리 단자**는 노출된 단자 부위를 테이프 등으로 감아 절연하는 식으로 **단락 방지 조치**를 할 것
- iii) **배터리**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파우치에 넣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함
- iv) **배터리**를 이동보조장비에서 탈거할 경우에는 장비제조사 또는 장비소유자의 **지침에 따라 탈거**할 것
- v) 배터리는 **300와트시(Wh)**를 **초과하지 않을 것**
- vi) 운송할 보조배터리가 **한 개만** 있을 경우에는 **최대 300와트시(Wh)**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운송할 보조배터리가 **2개**일 경우에는 **각각의 배터리가 160와트시(Wh)**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Q13. 공항검색대 및 보안구역 등에서 이동하면서 보조배터리 사용(타기기 충전)이 가능한가요?

- ☐ 공항 이용객은 공항검색대 및 보안구역 등 공항 내에서 이동하면서 보조배터리를 이용한 전자기기의 충전이 가능하지만 사용 후에는 비닐봉투 보관 등 단락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Q14. 보조배터리를 위탁수하물로 반입 가능한지 ?

- ☐ 보조배터리는 용량이나 수량에 관계없이 위탁수하물 반입이 불가하고 반드시 승객이 직접 소지하여 기내로 반입하여야 합니다.

Q16. 전자담배도 비닐봉투에 넣어야 하는지 ?

- ☐ 전자담배는 비닐봉투에 넣을 필요는 없으나 반드시 승객이 직접 소지하여야 하고 의도치 않게 작동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Q17. 기내에서 핸드폰 충전도 불가능한지 ?

- ☐ 기내 전원 및 보조배터리를 이용한 핸드폰 충전은 가능하지만, 보조 배터리를 충전(기내전원 또는 타 보조배터리 → 보조배터리 충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18. 보안검색절차 도중에도 보조배터리를 투명비닐봉투에 넣어서 보관해야 하나요?

- ☐ 보안검색장내에서 투명비닐봉투에 보관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기내에서는 투명비닐봉투에 보관하거나 절연테이프로 단락 조치한 후에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앞주머니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Q19.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로 핸드폰을 충전할 때에도 비닐봉투에 보관한 상태로 해야 하는지요?

- ☐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이용하여 핸드폰 등 전자기기를 충전할 때는 비닐봉투에 넣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충전 중인 전자기기와 보조배터리에 이상징후가 나타나지 않는지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Q20. 모바일로 사전체크인을 마친 승객이 100~160와트시(wh)이하 보조배터리를 1개 소지하고 보안검색장으로 진입하여 적발된 경우는 어떻게 조치되나요?

- ☐ 보안검색장에서 미승인 보조배터리가 적발된 경우, 보안검색요원이 항공사 직원을 유선호출하여 직접 방문하여 승인여부를 확인·처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체크인카운터를 방문하여 승인 절차 후 통과가 가능합니다.
- 항공사와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에는 해당 항공사의 탑승구에서 승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Q21. 보조배터리로 핸드폰을 충전 중에도 보안검색 X-Ray를 통과시킬 수 있나요?

- ☐ 보조배터리로 핸드폰을 충전시에도 보안검색대를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기내에서도 보조배터리를 이용한 핸드폰 충전은 가능하지만, 충전 중 이상 징후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 다만, 핸드폰 충전이 완료된 경우는 다시 투명비닐봉투에 넣어 보관하거나, 절연 테이프 등으로 단락조치하여야 합니다.

Q22.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몸에 소지하고 있는데 보조배터리에서 열감이 나는 등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 보조배터리 등에 이상징후가 발견되는 즉시 몸에서 분리하여 바닥에 내려놓고 승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Q23. 외국에서 입국하는 승객이 5개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조치사항은?

- ☐ 외국공항에서 입국하는 승객의 경우 보조배터리 반입절차에 대한 인지가 부족할 수 있어, 보조배터리 반입절차 강화방안에 대한 안내 후 추가 수량의 경우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보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Q24. 보조배터리 반입절차 강화방안을 지키지 않고 거부하는 승객의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 현행 규정상 보조배터리 반입절차 관리강화 방안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승객을 처벌할 근거는 없습니다.
- 하지만, 기내 안내방송과 승무원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항공보안법」 제23조 승객의 협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 및 제49조>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④ 항공기 내의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49조(벌칙) ① 제23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25. 기존 WH 기준에서 Wh/mAh로 단위가 병기됨에 따라 전압이 미표기된 보조배터리의 경우, mAh로 적용하여 판단이 가능한지?

- ☐ Wh/mAh 병기 표시는 승객 및 안내직원의 편의를 위해 표기한 것이며 승객은 소지하고 있는 보조배터리를 확인하여 3.7V가 아닐 경우, 정확한 용량 계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항공사에서는 항공권을 구입한 승객에게 보조배터리의 용량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반입이 거절될 수 있음을 안내·홍보하여야 합니다.

Q26. 승인스티커가 소진되어 없을 경우, 다른 색의 스티커로 대체하여 사용해도 되는지?

- ☐ 항공사에서는 스티커가 소진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커가 소진되었을 경우, 다른 색의 스티커에 Wh/수량 및 항공편 정보 등을 기재 시, 해당 스티커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Q27. 배터리 사양정보에 6400mAh(5V), 3500mAh(9V), 2550mAh(12V) 등 여러 전류/전압 표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 상기 질문 내 수치는 출력 전류(전압)이며 이것은 배터리 내부의 컨버터를 통해 변환·출력되는데 이 과정에서 용량 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보조배터리 자체 용량의 전류/전압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배터리 정보에 여러 전류/전압 표시가 있을 경우, 각각 계산하여 가장 높은 수치를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28. 보조배터리에 대한 정보를 출력해서 보여줘도 되는지?

- ☐ 제품설명서나 제조사 홈페이지의 배터리 정보를 출력하여 배터리 용량에 대한 증빙이 가능할 경우, 해당 배터리의 반입이 가능합니다.